

# 11. 리히텐슈타인(Liechtenstein)

## 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52년(노령 및 유족) 1954년 시행; 1960년(장애); 1965년(지원 및 간호 수당); 1988년(강제직역연금)

## 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, 강제직역연금, 사회부조

## 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 : 리히텐슈타인 거주자
- 강제직역연금 :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19세 이상 고용된 사람
  - 1994~1999년 생은 23세, 1997~1998년 생은 22세
  - 연간 소득이 13,920 스위스 francs(이후 'francs'으로 표기) 이상
  - 자영자는 임의 적용
- 사회부조 : 리히텐슈타인 거주자, 유럽연합 및 특정 국가 국민 포함

## 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사회보험 : 총소득에 대해 노령 및 유족연금은 3.95%, 장애연금은 0.75%
    - 비고용자는 소득에 따라 연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, 노령과 유족연금을 위해서는 243 francs ~ 8,100 francs을 납부하고, 장애연금을 위해서는 45 francs ~ 1,500 francs을 납부함. 총 보험료 납부액의 2.5%에 해당하는 관리수수료 납부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 없음
  - 강제직역연금
    - 적용 소득의 8%이며 자발적인 추가 납부 가능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13,920 francs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83,520 francs
  - 사회부조 : 보험료 없음
- 자영자
  - 사회보험 : 연간소득 3,000 francs까지는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해 234 francs 고정 금액 + 총 납부 보험료의 2.5%에 해당하는 관리수수료 납부
    - 3,000 francs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, 노령 및 유족연금을 위해서 소득의 8.1%, 장애연금을 위해서 1.5% + 관리수수료로 총 보험료 납부액의 2.5%에

해당하는 금액을 납부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 없음
- 강제직역연금
  - 임의 보험료 및 관리 수수료
- 사회부조 : 보험료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 - 총급여에 대해 노령 및 유족연금은 4.15%, 장애연금은 0.75% +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 총액의 2.5% 관리수수료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 없음
- 강제직역연금
  - 적용 소득의 8%이며 자발적인 추가 납부 가능
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와 적어도 동일해야 함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13,920 francs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83,520 francs
- 사회부조 : 보험료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연간 30,000,000 francs 납부
  - 정부의 보험료는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- 강제직역연금 : 보험료 없음
- 사회부조 : 보험료 없음

## 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65세
  - 1958년 1월 1일 전 출생자는 64세
  - 가입자 연령층에 기초한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충족
  - 부분연금 : 가입자가 1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완전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  - 조기연금 : 60세 도달, 1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
  - 연기연금 : 70세까지 연장 가능
  - 자녀수당 : 18세 미만(학생 또는 견습생인 경우 20세) 자녀에 대해 지급
  - 간호수당 : 65세
    - 중간정도의 상태인 경우(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)
    - 심각한 상태인 경우(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간호 필요)

- 강제직역노령연금
  -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65세
  - 1958년 1월 1일 전 출생자는 64세
  - 조기연금 : 사회보험 조기노령연금 수급, 60세 도달 시
  - 연기연금 : 연기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 연령층에 기초한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충족
  - 근로능력을 67% 이상 상실 판정(전면적 장애)
  - 부분연금 : 가입자가 1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완전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  - 부분장애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능력을 40% ~ 66% 상실한 자
  - 장애수당 : 45세 미만 가입자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
  - 자녀수당 : 18세 미만(학생, 견습생인 경우 20세) 피부양 자녀를 위해 지급
  - 간호수당 : 2세 ~ 65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
    - 일반정도인 경우(적어도 이틀 정도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)
    - 중간정도인 경우(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)
    - 심각한 상태인 경우(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)
- 강제직역 장애연금
  - 65세 이전에 발생한 67% 이상 근로능력 상실 판정(전반적 장애)
  - 자녀수당 : 18세 미만(학생, 견습생인 경우 20세) 피부양 자녀를 위해 지급
  -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은 정지되고 강제직역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가정지원 및 돌봄 수당(사회부조)
  -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정
  - 수당은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유료 가정 돌봄에 대해 지급
  - 가정 지원 및 돌봄국이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 연령층에 기초한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 충족
  - 유족연금수급권자
    - 사망 당시 사망자와 5년 이상 혼인 상태였던 45세 이상의 유족배우자

- 별거 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이혼 배우자
- 18세미만의 자녀(학생, 견습공은 25세)
- 유족배우자연금은 재혼할 경우 정지됨
- 일시 유족연금 : 사망 당시 사망자와 5년 미만 혼인 상태였던 유족배우자
- 부분 유족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1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으나 완전 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부분 고아연금 : 사망자가 1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으나 완전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강제직역유족연금
  - 사망자가 강제직역연금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
  - 유족연금수급권자 : 유족배우자, 별거수당 자격이 있는 이혼 배우자, 18세 미만의 고아(학생, 견습공은 25세)에게 지급
  - 유족배우자연금은 재혼할 경우 정지됨

## 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 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가입자의 연간평균소득액에 따라 월 1,160 francs ~ 2,320 francs 지급
  - 연간 평균소득은 고용소득, 실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, 어린이나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간호 인정기간을 기초로 산정. 기혼자의 경우 연간 평균소득은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부부간에 균등히 배분
  - 부분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액지급
  - 조기연금 : 정상수급 연령 전 청구된 각 연수에 따라 감액 지급
    - 1956년 전 출생한 경우, 1년 조기 3% 감액, 2년 조기 7% 감액, 3년 조기 11.5% 감액, 4년 조기 16.5% 감액
    - 1956년 이후 출생한 경우, 1년 조기 5.5% 감액, 2년 조기 10.6% 감액, 3년 조기 15.2% 감액, 4년 조기 19.5% 감액
  - 연기연금 : 1958년 전 출생 경우, 가입자의 연기 기간에 따라 5.22% ~ 40.71% 증액, 1958년 이후 출생한 경우 4.5% ~ 26.1% 증액
  - 자녀수당 : 가입자 연령층에 지급되는 최저노령연금의 40%를 각 적용 가능 자녀에 대해 지급
  - 간호수당
    - 중간정도의 상태인 경우, 월 696 francs 지급
    - 심각한 상태인 경우, 월 928 francs 지급
  - 크리스마스 보너스 : 연금월액의 100%를 12월에 지급
  - 연금액 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정기 조정; 1년 내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% 이상 상승한 경우 연금액 조정 매해 실시
- 강제직역노령연금

- 연금계획의 규정에 따라 평생 연금이나 일시금 또는 둘의 조합으로 지급
- 연금 지급률은 연금계획의 규정에서 정함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
- 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

## ○ 장애연금

### 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자의 연간평균소득액 및 가입자 연령층에 요구되는 보험료 납부기간 연수에 기초하여 월 1,160 francs ~ 2,320 francs 지급
- 연간 평균소득은 고용소득, 실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, 어린이나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간호 인정기간을 기초로 산정. 기혼자의 경우 연간 평균소득은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부부간에 균등히 배분
- 가입자의 장애가 25세 이전 발생하고 최소 1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장애연금은 가입자 연령층에 지급되는 완전연금 최저율의 133.3% 이상으로 산정됨
- 부분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액지급
- 부분장애 : 근로능력의 영구적 상실정도가 50% 이상 67% 미만인 경우 완전장애연금액의 50%; 근로능력의 영구적 상실정도가 40% 이상 50% 미만인 경우 25% 지급
- 장애수당 : 가입자의 평균연간소득 가치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
- 자녀수당 : 가입자 연령층에 지급되는 최저장애연금월액의 40%를 각 자녀에 대해 지급
- 간호수당
  - 일반정도의 상태인 경우, 월 464 francs 지급
  - 중간정도의 상태인 경우, 월 696 francs 지급
  - 심각한 상태인 경우, 월 928 francs 지급
- 크리스마스 보너스 : 장애연금월액의 100%를 12월에 지급
- 연금액 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정기 조정; 1년 내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% 이상 상승한 경우 연금액 조정 매해 실시

### • 강제직역장애연금

- 연금계획의 규정에 따라 평생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
- 완전연금은 가입자의 연평균 적용소득의 30%이상
- 자녀수당 : 가입자 연적용소득의 6% 연금이 각 적용 가능 자녀에 대해 지급
- 부분장애 :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감액연금 지급

### • 가정지원 및 돌봄 수당(사회부조)

- 간호가 필요한 수준에 따라 10 francs(1단계) ~ 180 francs(4단계)의 일일 수당 지급

## ○ 유족연금

### 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배우자 연금 :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80% 지급
- 완전연금 : 자녀가 있는 유족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사망당시 자녀가 없는 45세 이상의 유족배우자에게 지급
- 일시유족연금 : 5년간 지급
- 별거하거나 이혼한 유족배우자에 대하여는, 총연금액이 자신에게 부여된 별거(이혼)수당의 가치가 될 수 있음
- 부분유족배우자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비례적인 감액연금 지급
  - ※ 재혼 시 연금 중단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권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40% 지급. 완전 고아는 각각 가입한 부모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
- 부분고아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비례적인 감액연금 지급
- 연금액 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정기 조정; 1년 내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% 이상 상승한 경우 연금액 조정 매해 실시

### • 강제직역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연금계획의 규정에 따라 평생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;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였다면 사망자의 노령이나 장애 직역연금의 60% 지급
  - ※ 최저배우자연금은 사망자 적용 연소득의 18%
- 고아연금 : 연금계획의 규정에 따라 평생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; 고아 1인당 가입자의 연평균소득의 6% 이상 ;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였다면 사망자의 노령이나 장애 직역연금의 20% 지급
  - ※ 최저고아연금은 각 고아에 대해서 사망자 적용 연소득의 6%

## 7. 관리운영기관

### ○ 사회보험

- 노령·유족·장애보험기구(Old Age, Survivor & Disability Insurance Institute)
  - <https://www.ahv.li>
  -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### ○ 강제직역연금제도

- 재정시장국(Financial Market Authority)
  - <https://www.fma-li.li>
  - 연금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, 강제직역연금제도 준수 보장

○ 사회복지

- 가정 지원 및 돌봄국(Department for Home Support and Care)
  - <https://www.familienhilfe.li>
  - 사회복지제도 운영

<2018년 ISSA 자료>